

# 녹음자료의 목록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ataloging of Sound Recordings

한 경 신(Kyung-Shin Hahn)\*\*

### 〈목 차〉

I. 서 론	2. 기술과 표목
II. 선행연구	1) 기술의 정보원
III. 녹음자료의 특성과 종류	2) 자료종별표시
1. 녹음자료의 특성	3) 형태사항의 기술
2. 녹음자료의 종류	4) 표목의 기술
IV. 녹음자료 목록상의 제문제	5) 통일표제
1. 녹음자료에 관한 목록규칙	V. 요약 및 결론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녹음자료 목록을 위해 많이 사용되는 비도서자료 목록규칙 중 녹음자료에 관한 규칙의 분석을 통해 녹음자료의 목록규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돋고, 앞으로 우리의 녹음자료 목록규칙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녹음자료의 특성과 종류에 대해 살펴보고, 기존의 녹음자료에 관련된 목록규칙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오늘날 녹음자료를 취급하고 있는 비도서자료 목록규칙의 근간을 이루는 ISBD(NBM) · AACR2R · AECT4 및 KORMARC(비도서자료용)을 대상으로 녹음자료 목록시 다른 자료들과 구별되는 특수한 기술영역, 즉 기술의 정보원 · 자료종별표시 · 형태사항 · 표목 및 통일표제에서의 특징과 제문제를 다루었다.

주제어 : 녹음자료, 비도서자료, 목록, 목록규칙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istinctiveness and problem areas in cataloging rules of sound recordings. In this study, therefore, the characteristics and kinds of sound recordings and the cataloging rules related to sound recordings in non-book cataloging rules are examined first as the backgrounds. Then the sources of information, general material designation, physical description, choice of headings, and uniform titles in ISBD(NBM) · AACR2R · AECT4 and KORMARC(NBM) are analyzed. And the special issues and some problems to be considered in cataloging of sound recordings are presented.

Key Words : sound recordings, non-book materials, cataloging, cataloging rules

\* 본 논문은 2000학년도 한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남대학교 문과대학 인문학부 문헌정보학과 교수(hks0330@eve.hannam.ac.kr)

· 접수일 : 2001. 2. 11 · 최초심사일 : 2001. 2. 24 · 최종심사일 : 2001. 3. 9

## I. 서 론

녹음자료(sound recordings)란 음(音)을 재생하기 위하여 기계적 또는 전기와 전자적인 방법으로 기록한 음의 진동에 대한 기록으로,<sup>1)</sup> 음향자료·음성자료·청각자료·오디오자료라고도 한다. 녹음자료는 Thomas A. Edison이 음의 수록에 대한 실험을 시작한 이래 계속 발전하여 특히 도서관 음악자료의 중요한 정보자료로 발전하여 왔으며, 오늘날에는 어학·문학·연설·과학 등 여러 분야에서 음의 기록매체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처음 음을 기록한 청각자료만으로 대두된 녹음자료는 오늘날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청각과 시각을 겸한 시청각자료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왔다. 1927년 미국에서 유성필름이 처음 시도된 이래 영상과 음을 동시에 수록한 필름을 비롯하여 영상과 음이 함께 수록되나 TV 수상기에 의해 재생되는 비디오테이프·비디오디스크 등의 비디오자료, 그리고 음과 더불어 문자와 영상·화상 등이 함께 수록되는 멀티미디어자료까지 녹음자료의 영역이 확대해 가고 있다. 그러나 각종 목록규칙에 있어서 음과 영상을 함께 기록한 자료에 대한 목록은 영상자료나 영사자료 또는 시청각자료 등으로써 따로 구분하여 별도로 취급하고<sup>2)</sup>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목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기존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녹음자료는 음만을 기록한 녹음자료를 말한다.

녹음자료의 유형은 크게 음반과 테이프로 구분된다. 이 중 음반은 등근판 위에 음을 기록하여 원래의 생음에 가깝도록 재생시킨 것을, 테이프는 음을 필요에 따라 테이프에 저장해 두었다가 원음에 가깝도록 재생하여 들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들 녹음자료는 비도서자료(시청각자료) 중 최초로 도서관자료로서 정보봉사에 활용되면서 과학의 발달에 따라 지금까지 계속 발전·변화되어 왔으며 종류도 다양하다.

녹음자료는 오늘날 크게 증가하여 도서관에 있어서 비도서자료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자료의 효율적인 조직 및 검색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도서관 녹음자료의 검색도구로서 가장 중요한 목록을 위한 목록규칙은 오늘날 대부분 비도서자료의 목록규칙의 일부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ISBD(NBM)을 중심으로 AACR2와 AACR2R·KORMARC기술규칙(비도서자료용)·AECT규칙 등이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도서관들의 녹음자료 목록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 규

1) Michael Gorman and Paul W. Winkler ed.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2nd ed. 1988 revision Chicago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88. p. 623.

2) 음과 영상을 함께 수록한 자료에 대해 AACR2R에서는 Motion Pictures and Videorecordings(제7장), USMARC에서는 VM(Visual Materials), KORMARC(비도서자료용)에서는 시청각자료 중 평면영사자료에서 녹음자료와 구별하여 별도로 취급하고 있다.

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어 각 도서관 목록마다 다르게 기술되므로써 표준화 및 협력 문제와 더불어 이용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녹음자료의 특성과 종류에 대해 살펴본 후, 녹음자료와 관련된 기존의 목록규칙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녹음자료를 포함한 비도서자료에 관한 목록규칙 중 국제적인 면에서 비도서자료의 정리에 표준화를 기하는 계기를 마련한 ISBD(NBM), 그동안 도서와 비도서자료의 통합목록규칙으로 발전하여 온 AACR2R, 국내 학교도서관 및 미디어센터 등에서 가장 많이 채택되어온 AECT4 및 국내의 유일한 비도서자료용 목록규칙인 한국문현자동화목록기술규칙: 비도서자료용(이하 KORMARC(비도서자료용)이라 한다)에 있어서 녹음자료에 관한 규칙을 대상으로, 녹음자료 목록기술시 다른 자료들과 구별되는 특수한 기술영역, 즉 기술의 정보원·자료종별표시·형태사항·표목 및 통일표제 등에서의 특징과 제문제를 살펴보므로써 녹음자료의 목록규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돋고, 앞으로 우리의 녹음자료 및 비도서자료 목록규칙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

녹음자료의 목록과 관련된 선행연구 중 국내의 연구로는 국악관련 녹음자료의 목록에 관한 박수정의 연구<sup>3)</sup> 외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국악녹음자료의 관리와 이용에 가장 기본이 되는 목록 작성에 있어서 국악의 특수성과 국제성을 고려한 목록기입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AACR2를 준거로 목록기술상의 제문제·표목의 선정 및 통일표제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비도서자료 중 영상자료인 영화필름과 비디오자료에 대한 목록연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데 반하여,<sup>4)</sup> 녹음자료의 목록에 대하여는 목록규칙에서와 마찬가지로 비도서자료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정도이다. 또한 녹음자료를 포함한 비도서자료의 목록 중 어느 한 기입요소나 이들의 관리에 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수행되어 왔다.(참고문헌 참조)

국외의 연구로는 녹음자료 목록의 전반적인 문제를 매뉴얼 형식으로 다룬 단행본으로써 J.

3) 박수정, 국악녹음자료의 목록기입에 관한 연구 : 영미목록규칙 제2판에 준거하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4) 이창수, “영화필름에 관한 목록규칙의 비교연구”, 《고성수선생정년퇴임기념논문집(경북대 도서관)》 1990. pp. 111-143.

\_\_\_\_\_ “비디오자료에 관한 목록규칙의 비교연구”, 《청량정필모박사화갑기념논문집》 1990. pp. 163-188.

E. Daily의 *Cataloging Phonorecordings*<sup>5)</sup>와 Richard P. Smiraglia의 *Music Cataloging*<sup>6)</sup>을 비롯한 몇몇 논문이 있을 뿐이다.(참고문헌 참조) 또한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비도서자료나 시청각자료의 목록을 다룬 단행본과 논문들에서 녹음자료의 목록을 부분적으로 다루거나 목록의 어느 한 기입요소를 다루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III. 녹음자료의 특성과 종류

#### 1. 녹음자료의 특성

녹음자료는 음을 재생하기 위하여 기계적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기록한 음의 진동에 대한 기록으로서 음에 의한 기록물이다. 따라서 문자에 의한 기록물에 비하여 청각을 통해 실제의 세계를 보다 구체적이며 감상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그리하여 녹음자료는 주로 음악자료의 중요한 정보자료로 발전하여 어학·연설·설화·과학·교양·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음의 기록매체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음악도서관 및 방송국 도서관을 비롯하여 일반도서관에서도 도서관자료로서 중요한 정보재로 이용되고 있다.

음에 의한 기록물로서 녹음자료는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전기와 전자에 의한 새로운 정보전달시대가 출현하면서 등장한 것으로, 크게 음반과 테이프로 구분되어 발전하여 왔다. 이 중 음반은 1877년 Thomas A. Edison이 음의 기록에 대한 실험을 시작한 이래, 1887년 독일의 Emile Berliner가 원반식 축음기를 개발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한편 테이프는 1888년 O. Smithon에 의해 자기(磁氣)에 의한 녹음이 가능하다는 이론이 발표된 후, 1898년 덴마크의 Valdemar Poulsen이 강선(鋼線)을 사용한 자기녹음을 발명하고, 1941년 Brown Müller와 Weber가 현재의 자기테이프 녹음기를 발명하면서부터이다. 이후 이를 녹음자료는 1980년 이래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을 초월한 디지털 녹음방식의 매체가 개발되므로써 DAD(digital audio disc), DAT(digital audio tape) 시대를 열게 되었다<sup>7)</sup>. 따라서 잡음이 없는 고음질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수명도 반영구적이어서 자료의 보존측면에서 큰 의의를 지니게 되었다. 또한 이를 녹음자료는 비도서자료 중 처음으로 도서관

5) J. E. Daily, *Cataloging Phonorecordings : Problems and Possibilities* New York : Marcel Dekker, 1975.

6) Richard P. Smiraglia, *Music Cataloging : the Bibliographic Control of Printed and Recorded Music in Libraries*. Englewood, Colo. : Libraries Unlimited, 1986, 1989.

7) 김남석, 「비도서자료 : 정리의 이론과 실제」. 수정증보판. 대구 : 계명대학교 출판부, 1994. p. 25.

자료로서 정보봉사에 활용되면서 과학의 발달에 따라 지금까지 계속 발전·변화되어 오고 있으며 종류도 다양하다.

음의 기록물인 녹음자료가 갖는 특성으로는 1) 몇 번이라도 반복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반복성, 2) 사람·자연 및 인공의 소리를 그대로 기록할 수 있는 자연성, 3) 음의 기록매체로서의 기록성, 4) 필요에 따른 편집이 비교적 간편한 편집의 용이성, 5) 시간적·공간적 제한을 초월할 수 있는 시공의 극복성, 6) 전달의 다양성, 7) 조작이 간편한 선택·이용의 용이성(특히 테이프), 8) 전문적인 교육지도를 위한 교재 및 교육적 가치, 9) 비교적 안정된 가격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외에도 자료의 수명문제를<sup>8)</sup> 들 수 있으나 오늘날 디지털 녹음방식의 매체가 개발되므로써 이에 대한 문제를 크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술공학의 진보에 따라 녹음자료 자체의 형태·기록방법·조작 등에 따른 계속적인 변화로 인해 이에 따른 장서관리 및 조직의 어려움도 따른다. 그리고 도서에 비하여 서지통정도구 즉 2차자료가 상당히 뒤진 상태로 목록을 비롯한 완전한 서지통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녹음자료는 음을 기록한 청각자료로 녹음자료를 통해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비도서 자료와 마찬가지로 재생할 수 있는 기기(器機)를 필요로 한다. 또한 녹음자료 재료의 성분·크기·형태 등 각 자료가 갖는 특성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자료의 수명과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관리와 보존에 항상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그리고 음의 재생에 있어 녹음의 질은 마치 도서에 있어서 인쇄·제본의 질을 판단하는 것과 같이<sup>9)</sup> 중요하므로 정기적인 점검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녹음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보존에 대한 연구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녹음자료의 올바른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방법으로는 첫째, 적절한 온도( $18^{\circ}\text{C} \sim 22^{\circ}\text{C}$ )와 습도(상대습도 50%)를 유지할 것, 둘째, 음반의 먼지제거(특히 비닐음반)에 유의할 것, 셋째, 음반은 반드시 칸막이가 있는 목재제품의 특수서가에 보관할 것, 넷째, 특히 테이프는 소리가 자석의 파(波)로 녹음되므로<sup>10)</sup> 자기가 강한 곳이나 자성물체에 가까이 두지 말 것, 다섯째, 보관기간 동안에도 음질의 손상을 사용유무에 관계없이 계획되므로 반드시 정기적인 점검을 할 것, 여섯째, 이용자에 의한 자료손상을 고려하여 이용자 대상의 자료취급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sup>11)</sup> 일곱째, 이용후 반납된 자료의 손상유무를 반드시 확인할 것<sup>12)</sup> 등을 들 수 있다.

8) 헬락과 비닐음반의 가능한 재생횟수는 보통 300회 정도이나, 특정 환경 내에서는 소수의 재생 후에도 흡이 생길 수 있다.

9) 정진홍, 음악도서관의 전문봉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p. 28.

10) 김병진, 『오디오가이드』. 서울 : 과학도서, 1983. p. 159.

11) 김옥진, “음악도서관의 음향자료 관리에 관한 연구”, 《도서관학연구지(송의여전 도서관과)》 제16호 (1991), p. 65.

12) *Loc. cit.*

## 2. 녹음자료의 종류

녹음자료는 음을 재생하기 위하여 기계적으로 또는 전기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기록한 음의 진동에 대한 기록자료로, 1877년 Thomas Alva Edison이 음의 수록에 대한 실험을 시작한 이래 계속 발전하여 도서관자료 중 비도서자료의 중요한 정보재로 발전하여 왔다.

녹음자료의 종류는 녹음방법이나 형태 등에 따라 여러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AACR2R에서는 녹음자료의 종류로서 discs · tapes · piano rolls · sound recordings on film의 4가지로 구분하고, 이 중 테이프는 용기형태에 따라 open reel-to-reel · cartridges · cassettes로 구분하고 있다.<sup>13)</sup> 또한 KORMARC(비도서자료용)에서는 녹음자료(MU=Music)로서 필사된 악보 · 인쇄된 악보 · 녹음자료(음악 또는 음악 이외)를 포함하고 있으며,<sup>14)</sup> 악보와 음반 · 테이프로 구분하여 카드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piano rolls는 오늘날 쉽게 접할 수 없으며, sound recordings on film 역시 대부분 시각적 영상과 음을 함께 수록한 필름 및 비디오자료로서 발행되고 있다. 또한 악보는 음을 수록한 매체와는 달리 청각의 영역에 속해 있는 음악을 기보법(記譜法)에 의해 가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써 주로 인쇄된 형태로 출판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오늘날 녹음자료의 주종을 이루는 음반과 테이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음반(disc)

음반은 등근판 위에 음을 기록하여 원래의 생음에 가깝도록 재생시키는 것으로, record · audiodisc · phonodisc · phonograph record(gramophone record) · phonorecord · simply disc라고도 불리운다.<sup>15)</sup> 1877년 Thomas A. Edison이 Tinfoil Cylindar로 음의 기록에 대한 실험을 시작한 이래, 1887년 독일의 Emile Berliner가 원반식 축음기인 78회전판(SP판)을 개발한 것이 음반역사의 시작이다. 그 후 1948년 Columbia 회사에서 제작한 33⅓회전판(LP판)은 Joseph Pease Maxfield와 Peter Cave Goldmark가 고안한 것으로, 78회전판(SP판)에 비해 음역이 넓고 거의 원음에 가까운 기록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1949년에는 미국의 RCA Victor회사가 일명 도너츠(doughnut)판으로 알려진 45회전판(EP판)을 제작하였으나, 그 이후로도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LP판이었다. 1982년 독일에서 레이저광선을 사용해서 회전하는 원반에 기록된 신호를 읽고 재생하는 디지털방식에 의한 CD가 개발되어 오늘날 음반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또한 1991년 5월에는 광자기라는 최신기술을 사용한 6.4cm 크기의 MD(mini

13) Michael Gorman and Paul W. Winkler ed,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2nd ed. 1988 revision op cit., pp. 161-162.

14) 『한국문헌자동화목록기술규칙: 비도서자료용』.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1996. p. 2.

15) Heartsill Young, *The ALA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hicago : ALA, 1983. p. 14.

disc)가 개발되어 녹음자료로서의 음반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상과 같이 음반은 과학의 발달에 따라 음질·녹음·시간·크기·수명 등에서 계속 새로이 발전·변화되어 왔다. 오늘날 주종을 이루는 디지털 방식에 의한 음반은 잡음을 최대한 줄이면서 크기는 점점 소형화되는 반면에, 녹음시간은 배나 연장시키고 영구적인 사용을 가능케 하면서 발전되고 있다.

음반은 테이프에 비해 주로 음악자료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며, 그 외에도 문학 및 어학의 학습과 감상·연설, 연예·사회시사 및 역사의 기록과 그의 재현·과학적기록까지에도<sup>16)</sup> 다양하게 사용된다. 또한 테이프에 비해 정착적인 특성으로 녹음재생전환 및 소거가 불가능하여 편집이 어려운 단점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 레이저 광선과 디지털 녹음방식에 의한 DAD는 음질이 우수하고 흠품이나 먼지에 강하며 반영구적이어서 녹음자료의 질적측면과 보존측면에서 매우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하겠다.

음반의 종류는 음반의 재질·녹음방식·크기·채널수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된다.<sup>17)</sup> 첫째, 재질 즉 제작재료에 따라 1960년을 중심으로 그 이전에는 셀락음반이 지배적이었고 그 이후는 비닐음반이 그 주류를 이루었으며,<sup>18)</sup> 오늘날의 디지털방식에 의한 음반은 폴리카보네이트를 주재료로 하고 있다. 둘째, 녹음방식에 따라서는 음의 진폭을 음구에 각하여 기록하는 아날로그방식과 음의 진폭을 이진부호의 디지털신호로 바꾸어 녹음하는 PCM(pulse code modulation)에 의한 디지털방식이 있다. 이 중 아날로그방식에는 회전수에 따라 SP판(78회전)·LP판(33⅓회전)·EP판(45회전)이 있으며, 디지털방식에는 오늘날 음반의 주종을 이루는 CD를 비롯하여 AHD(audio high-density disc)와 MD가 있다. 셋째, 음반 자름의 크기에 따라서는 7"판·10"판·11"판·12"판·16"판이 있으며, 오늘날 디지털방식에 의한 음반은 12cm이고 광자기에 의한 MD는 6.4cm까지 소형화되고 있다. 넷째, 채널수에 따라서는 화성이 아닌 독립한 선을만을 내는 소리로서 주로 비음악적인 용도에 사용되는 단음(모노)과 음역을 나누어 수록·재생케하므로써 음악감상용의 입체음향을 가능케하는 스테레오가 있다. 이 중 스테레오는 고음과 저음을 2가지로 분리·재생시켜 보다 생음에 가깝게 한 2신호 스테레오와 입체감을 더하기 위해 음을 4가지로 분리·재생시킬 수 있게 한 4신호 스테레오가 있다.

## 2) 테이프(tape)

테이프는 음의 파형을 자기패턴으로 변형하여 기록한 자기녹음방식으로 음을 필요에 따라 테이프에 저장해 두었다가 원음에 가깝도록 재생하여 들을 수 있게 한 것으로, 녹음테이프·audiotape·tape recording(tape record)·phonotape라고도 불리운다.<sup>19)</sup> 테이프의 역사는 1888

16) 김남석, 조도희 지음, 『비도서자료의 조직이론』,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0. p. 36.

17) Ibid., pp. 31-32 참조

18) 김옥진, op. cit., p. 59.

년 O. Smithon에 의해 자기에 의한 녹음이 가능하다는 이론이 발표된 후, 1898년 덴마크의 Valdemar Poulsen이 강선을 사용한 자기녹음을 발명하면서 부터이다. 그 후 1930년 독일의 Pfleumer가 종이나 플라스틱 표면에 자성분을 입힌 테이프를 만들었고, 1934년에는 이를 적용하여 독일에서 종이재의 바탕에 자성철분을 씌운 종이테이프가 개발되어 상품화되었다. 그러나 녹음에 대한 실용화는 1941년 Brown Müller와 Weber가 현재의 자기테이프 녹음기를 발명한 이후부터이며, 1948년 3M사가 아세테이트 베이스의 녹음테이프를 개발함으로써 급속히 발전되었다. 1963년에는 네델란드의 필립사가 베를린 라디오 쇼에서 세계 최초로 컴팩트 카세트를 선보였고, 그 이후 폴리에스터 필름을 베이스로 사용하는 현재 모양의 소형 카세트 테이프를 상품화하여 오디오테이프의 혁명을 일으켰다. 또 1971년에 미국의 듀퐁사가 크롬테이프를 개발하였고, 1980년에는 역시 미국의 3M사가 메탈테이프를 실용화하였다.<sup>20)</sup>

최근 미래의 테이프라 불리우는 DAT는 1984년 일본의 소니사가 개발하여 1985년 발매를 시작한 것으로, 디지털 녹음방식에 의한 기록재로 CD보다도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음성기록재로서 CD가 가진 장점에 더하여 재생과 동시에 녹음까지 할 수 있는 제4세대의 오디오로 불려지고 있다. 또한 필립사가 개발한 DCC(digital compact cassette)는 디지털한 음량신호를 레이저로 재생하는 새로운 타입의 오디오테이프로서, 기존의 카세트테이프의 형식과 각종 장점을 모두 구비하면서도 소리의 녹음 및 재생방식에 있어서는 CD와 같은 수준의 선명한 음질을 재현할 수 있는 녹음·재생방식이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CD에 비해 대중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테이프 역시 과학의 발달에 따라 음질·수명·녹음·시간 등에서 계속 발전·변화되어 왔다. 오늘날 발전되고 있는 테이프는 음질이 우수하고 녹음시간은 연장되면서 수명이 반영구적일 뿐만 아니라 음반에 비하여 녹음·제거·재생 및 조작 등의 편리성으로 인해 음의 기록재로서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계속 발전되고 있다.

테이프는 음반에 비해 녹음의 제거와 재생이 자유롭기 때문에 음악 외에도 강연·편지·연설·문학작품낭독·어학학습용 등 우리의 실생활과 직결된 정보매체로 많이 사용될 뿐만 아니라 음의 기록재로서 도서관자료로서의 중요한 정보재로 발전되어 왔다. 또한 녹음도서·테이프도서·카세트북·사운드북·토킹북(talking book) 등으로 불리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주요한 도서관자료로서 점자도서관을 비롯한 공공도서관에서도 중요한 정보재가 되고 있다. 그리고 누구나 손쉽게 장소나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자료를 생산하고 재생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세계적으로 급속히 보급, 중요한 음의 기록재로 대중화되고 있다.

테이프의 종류는 테이프의 녹음방식·용기·트랙수·채널·재생속도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된다.<sup>21)</sup> 첫째, 녹음방식에 따라 음반과 마찬가지로 아날로그방식과 디지털방식이 있다. 이

19) Heartsill Young, *op. cit.*, p. 15.

20) 이영동, 『알기쉬운 오디오』. 서울 : 삼호출판사, 1992. p. 185.

중 디지털방식에는 회전헤드방식인 R-DAT(rotary head DAT)와 고정헤드방식인 S-DAT(stationary head DAT) 및 S-DAT의 일종으로서 아날로그 겸용인 DCC가 있는데, 주로 DAT로 개발되고 있다. 이들은 CD를 상회하는 고음질과 더불어 녹음과 재생이 가능하므로써 미래의 테이프로서 그 활용폭이 점점 확대될 것이다. 둘째, 용기에 따라서는 릴·카트리지 및 카세트식이 있다. 이 중 릴식은 릴의 직경에 따라 7.5cm · 10cm · 17.5cm · 26.3 / 27.5cm 및 35cm 등이, 카세트식은 연주시간을 단위로 한 C30 · C46 · C60 · C90 · C180 등이 있다. 오늘날에는 카세트식이 취급과 사용에 편리하여 가장 많이 보급되어 중요한 기록재로 대중화되고 있다. 셋째, 트랙수에 따라서는 테이프의 전체폭을 하나의 녹음대로 음을 저장하고 재생케 한 전면트랙(single track), 왕복녹음으로 테이프의 반폭을 녹음대로 하여 녹음과 재생을 가능케 한 반폭트랙(double track), 테이프의 왕복  $\frac{1}{4}$ 폭을 녹음대로 하여 녹음과 재생을 가능케 한 4분폭트랙(4 track), 테이프의  $\frac{1}{8}$ 폭을 녹음대로 하여 녹음과 재생을 가능케 한 8분폭트랙(8 track) 등이 있다. 넷째, 채널에 따라서는 역시 음반과 마찬가지로 녹음신호계통 및 재생계통이 단일한 하나의 채널로 수록한 단음(모노)과 음역을 나누어 수록·재생케 한 스테레오가 있다. 이 중 스테레오는 2개의 음역으로 나누어 수록·재생케 한 2신호 스테레오와 음을 4개의 채널로 재생케하여 보다 원음에 가깝게 한 4신호 스테레오가 있다. 다섯째, 재생속도에 따라서는 1초동안에 연주되는 테이프의 길이를 cm로 나타낸 것으로, 2.38 cps · 4.76 cps · 8.52 cps · 18.55 cps · 36.75 cps · 73.50 cps 등이 있다. 1981년에는 체코의 Prague에서 테이프의 녹음 및 재생에 관한 규격으로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규격을 정하여 세계적으로 통일하여 왔는데, 릴식과 카트리지식의 규격에는 38 cm/s · 19cm/s · 9.5cm/s가 있으며 카세트식은 4.76cm/s가 있다.<sup>22)</sup>

## IV. 녹음자료 목록상의 제문제

### 1. 녹음자료에 관한 목록규칙

20세기에 들어와 정보의 폭증과 공학의 급격한 발전은 문자에 의한 도서만으로는 모든 원하는 정보나 지식의 입수를 불가능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래의 문자정보에서는 도저히

21) 김남석, 조도희 지음. *op. cit.*, p. 32 참조

22) 서용준, 『오디오입문』. 서울 : 세화, 1994. p. 132.

얻을 수 없는 청각과 시각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문자 이외의 청각과 시각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비도서자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이들 자료에 대한 서지통정을 위한 목록작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초기의 도서관 목록규칙은 주로 도서를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는데, 비도서자료에 대해서는 시각과 청각자료의 발달과 더불어 20세기 중엽에 와서야 비로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비도서자료 중 녹음자료에 관한 목록규칙은 오늘날 대부분 비도서자료 목록규칙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녹음자료에 관한 최초의 목록규칙은 1942년 녹음자료에 대한 최초의 규정인 미국음악도서관협회(MLA)의 *Code for Cataloging Phonographrecords*로, 후에 1949년 LC의 녹음자료에 관한 *Rules for Descriptive Cataloging in the Library of Congress*<sup>23)</sup>의 출발점이 되었다.<sup>24)</sup> LC는 1952년 본 규칙의 제9장 악보에 대한 보유로서 녹음자료에 관한 규칙을 별도로 발행하였다.<sup>25)</sup> 그리고 1958년에는 LC의 본 목록규칙을 사용하는 많은 도서관 사서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ALA와 MLA가 공동으로 악보와 녹음자료를 위한 *Code for Cataloging Music and Phonorecords*를 발행하였는데,<sup>26)</sup> 이는 여러가지 세부규칙들을 규정하고 있을 뿐 별다른 개정내용은 없었다. 한편 1949년 ALA의 *ALA Cataloging Rules for Author and Title Entries*는<sup>27)</sup> 도서와 함께 몇 종류의 비도서자료를 취급하여 왔다. 1955년 ALA는 비도서자료의 목록작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957년에는 비도서자료의 기술에 포함되어야 할 기입요소를 표준화시킬 것을 주장하여 11가지 사항을<sup>28)</sup> 기본적인 기입요소로 천거하였다. 이상의 녹음자료 및 비도서자료에 관한 목록규칙들은 1967년 AACR1이 등장할 때까지 사용되기는 했으나, 그 자체의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그리 널리 활용되지는 못하였다.

1961년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목록원칙회의(ICCP)의 「파리원칙」은 비도서자료에 관한 목록규칙을 도서와 같이 도서관자료에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따라서 1967년 발행된 AACR1은 이전까지 목록규칙의 일부분 혹은 별책으로 취급되던 비도서자료를 큰 비중으로 포함시키므로써 비도서자료의 목록규칙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AACR1의 제III부 비도서자료는 필사본·지도 및 지도책·영화와 필름스트립·악보·음반·그림·디자인 및 평면자료를 취급하고 있으며, 전체 300항목 중 70항목을 차지하고 있으며<sup>29)</sup> 이 중 녹음자료는 제14장

23) *Rules for Descriptive Cataloging in the Library of Congress*. Washington, D.C. : Library of Congress, 1949.

24) 박수정, *op. cit.*, p. 7.

25) Library of Congress Descriptive Cataloging Division, *Rules for Descriptive Cataloging in the Library of Congress : Phonorecords*. Wahington, D.C. : Library of Congress, 1952.

26) Joint Committee on Music Cataloging, *Code for Cataloging Music and Phonorecords*. Chicago : ALA, 1958.

27) Clara Beetle ed., *ALA Cataloging Rules for Author and Title Entries*. Chicago : ALA, 1949.

28) 11개의 기본기입요소: ① 공통자료표시사항 ② 표제명 ③ 책임성 ④ 발행사항 ⑤ 날짜⑥ 형태기술사항  
⑦ 시리즈 ⑧ 요약 ⑨ 대상수준 ⑩ 입수조건사항 ⑪ 주기사항

Phonorecords에서 취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III부는 50년대 초 LC의 것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하여 주로 시청각자료를 많이 취급하는 학교도서관 및 녹음자료를 많이 취급하는 음악도서관의 사서들과 도서관계의 비평을 받아, 이의 수정안을 논의하게 되었다.

동시에 대규모 대학도서관들의 전산화와 더불어 비도서자료에 대해서도 기계처리에 대처할 수 있는 목록규칙이 필요하게 되었다. ALA·LC 및 CLA(Canadian Library Association)는 *Non-book Materials Cataloguing Rules*,<sup>30)</sup> *Nonbook Materials*<sup>31)</sup> 및 *Standards for School Media Program*<sup>32)</sup> 등을 참조하여 수년간의 공동작업의 결과, 1975년에는 AACR1의 제12장 영화와 필름스트립(motion pictures and filmstrips)에 대한 개정판을, 1976년에는 제14장 음반(phonorecords)을 녹음자료(sound recordings)로 바꾸어 이에 대한 개정판을 발행하였다. 이들은 AACR2가 발행될 때까지 잠정적인 규칙으로 사용되었다.

한편, AACR1 이후 교육용 시청각자료를 많이 취급하는 학교도서관 사서들에 의한 많은 비판에 따라 AACR과는 무관하게 비도서자료만을 위한 독자적인 목록규칙들이 학교도서관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으로 1968년의 *Standards for Cataloging, Coding and Scheduling Educational Media*는 국가적인 비도서전문단체인 국립교육협회(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의 시청각교육부에 의해 발표된 것으로서 학교도서관 사서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이것은 계속 발전하여 1976년 제4판까지<sup>33)</sup> 발행되었으며, 미국 내 학교도서관 및 미디어센터 등에서 널리 채택되어 사용되었다. 또한 1960년대와 1970년대 초반 공학의 발달과 더불어 미국에 있어서 The National Defense Education Act(1958년)·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1965) 등의 국가적인 지원법령이 제정되면서 새로운 매체인 비도서자료가 일반공립학교와 교육일선에 널리 보급되면서 교육현장이나 미디어센터에서 보다 쉽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목록규칙이 요청되었다. 따라서 미국 내 각 주에서는 비도서자료의 목록지침을 자체 내에서 개발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sup>34)</sup>

- 
- 29) C. Sumner Spalding ed, *Anglo-American Cataloguing Rules : North American Text* Chicago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67. pp. 258-342.
- 30) *Non-book Materials Cataloguing Rules: Integrated Code of Practice and Draft Revision of the Anglo-American Cataloguing Rules, British text Part III*. 2nd ed. London : Council for Educational Technology for the United Kingdom with the Library Association, 1973.
- 31) Jean Riddle Weighs, Shirley Lewis, and Janet Macdonald, *Nonbook Materials : the Organization of Integrated Collections*. Ottawa : Canadian Library Association, 1973.
- 32) ALA and AECT, *Standards for School Media Program*. Chicago: ALA ; Washington, D.C.: AECT, 1969.
- 33) Alma M. Tillin and William J. Quinly, *Standards for Cataloging Nonprint Materials*. 4th ed. Washington, D.C.: Association for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1976.
- 34) 예를 들면, 1960년 Michigan주 학교도서관협회에 의해 개발된 *Cataloguing Manual for Nonbook Materials in Learning Centers and School Libraries*, 1967년 California주의 *Organization of Nonbook Materials in School Libraries*, 1971년 North Carolina주의 *AV Cataloging and Processing Simplified* 등이 있다.

1970년대에 들어와 과학기술의 발달과 이를 이용한 목록의 자동화 및 국제적인 정보유통을 위한 목록의 표준화를 위해 1974년 IFLA의 목록위원회에서는 컴퓨터에 의한 서지작성 및 검색을 전제로 *ISBD(M)*을 간행한 이래, 1977년에는 비도서자료용 즉 *ISBD(NBM)*을, 1987년에는 그 개정판을<sup>35)</sup> 간행하게 되었다. 이것은 각종 형태의 비도서자료가 공통적인 의사전달매체를 통하여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적인 면에서 녹음자료를 비롯한 비도서자료의 정리에 표준화를 기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1978년에 발행된 *AACR2*는 이 *ISBD*를 기초로 한 것으로, 과거의 도서중심의 기술형태에서 완전히 벗어나 도서관자료로서 도서와 비도서자료를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고 있으며 USMARC의 목록규칙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규칙은 총 2부 26장으로 구성되며, 제1부에서는 기술을 제2부에서는 표목을 다루고 있다. 이 중 녹음자료에 대하여는 제6장 녹음자료(sound recordings)에서 이에 대한 규칙과 예를 제시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제1장의 기본규칙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1988년에는 *AACR2*의 개정판으로서 *AACR2R*이 발행되었는데, 이것은 *AACR2*에서 잘못된 부분이나 누락된 것을 바로잡고, 용어를 일부 수정하였으며, 새로운 예를 추가한 것이다. 따라서 어떤 규칙은 새로운 용어를 더하거나 재배열하였으며, 적절한 참조가 부가되기도 하였다.<sup>36)</sup> 또한 *AACR2*와 마찬가지로 자료가 출판되는 매체에 관계없이 모든 도서관자료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녹음자료에 대하여는 역시 제6장 녹음자료에서 이에 대한 규칙과 예를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음악작품을 위한 통일서명에 대한 규칙(25.25-25.35)에서는 광범위한 재조직이 이루어졌다.

일본에 있어서 녹음자료를 비롯한 비도서자료에 관한 목록규칙은 1983년 『日本目録規則』의 별본으로 비도서자료에 관한 규칙을 발행하였다가,<sup>37)</sup> 1987년에는 비도서자료를 포함한 『日本目録規則』 1987年版을 발행하였다.<sup>38)</sup> 이후 1994년에는 1987年版 改訂版을 발행하였는데,<sup>39)</sup> 총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부는 기술, 제2부는 표목, 제3부는 배열을 다루고 있다. 이 중 녹음자료는 제1부 제6장 녹음자료에서 취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KORMARC를 개발하기 위한 일환으로 관계된 목록규칙을 한국정보관리학회에 연구를 위촉하여 한국 최초의 비도서자료 목록규칙으로서 1996년 한국문헌자동화목록규칙: 비도서자료용을 발행하였다.<sup>40)</sup> 본 규칙은 *ISBD(NBM)*을 기초로 비

35) *ISBD(NBM): 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 for Non-Book Materials*. London: IFLA International Office for UBC, 1977, 1987.

36) Michael Gorman and Paul W. Winkler ed,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2nd ed., 1988 revision. *op. cit.*, p. xiv.

37) 日本国図書館協会 目録委員会 編 『日本目録規則: 追録 および 修正』. 新豫備版 東京: 日本国図書館協会, 1983.

38) \_\_\_\_\_ 『日本目録規則』. 1987年版 東京: 日本国図書館協会, 1987.

39) \_\_\_\_\_ 『日本目録規則』. 1987年版 改訂版 東京: 日本国図書館協会, 1994.

40) 『한국문헌자동화목록기술규칙: 비도서자료용』.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1996.

도서자료를 녹음자료(MU=Music), 시청각자료(VM=Visual Materials), 지도자료(MP=Map), 컴퓨터파일(CF=Computer File)로 구분하여 모든 비도서자료를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비도서자료 목록규칙으로서 우리나라의 녹음자료를 포함한 비도서자료 목록정보의 표준화를 이룩하는데 출발점이 될 것이다.

## 2. 기술과 표목

### 1) 기술의 정보원

녹음자료는 도서와는 달리 서지기술을 위한 적절한 정보원의 선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녹음자료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자료의 형태상 대부분 브라우징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녹음자료의 정확한 목록기술을 위해서는 먼저 각 목록규칙에 따른 녹음자료의 기술정보원을 충분히 이해하고 식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조사대상의 목록규칙 중 기술의 정보원에 대하여 ISBD(NBM)은 녹음자료를 비롯한 비도서자료 모두를 공동으로 다루고 있음에 반해, AECT4는 서명저자사항에서만 녹음자료의 정보원을 다루고 나머지 사항은 비도서자료 공동으로 다루고 있으며, AACR2R과 KORMARC(비도서자료용)은 녹음자료만을 위한 별도의 정보원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비도서자료를 공동으로 다룬 ISBD(NBM)은 자료자체·레이블·용기·동봉자료 및 인쇄물 떨린자료 순으로 기술의 정보원 순위를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정보원의 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의 3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05), 녹음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1) 임의적이고 변하기 쉬운 것보다는 자료의 내용과 영구히 관련있는 정보원을 우선한다. 따라서 음반에 있어서 양면의 레이블은 용기나 동봉자료보다 좋은 정보원이 된다. 2) 그러나 1)로서 목록을 위한 요소가 충분하지 않거나 애매하여 명확하지 않은 경우와 자료의 내용과 영구히 관련있는 정보원이 없을 경우에는 가장 적절하게 자료 그 자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원을 우선한다. 따라서 설명적인 삽입물이 함께 발행된 카세트테이프의 경우, 특히 한 자료에 둘 이상의 작품을 수록할 때와 그 설명적인 삽입물이 종합서명에 대한 유일한 정보원 일 때에는 레이블보다는 그 삽입물에서 정보를 취한다. 3) 문자에 의한 정보원이 음에 의한 정보원보다 우선한다. 그러나 문자정보원이 자주 결함이 있거나 명확하게 잘못된 경우에는 완전한 음에 의한 정보원이 우선할 수 있다. 이상의 원칙 중 1)에 의하지 않은 다른 정보원에서 취한 표제저자사항·판차사항 및 발행사항은 각 기술사항에 따라 정보원에 관한 사항을 주기사항에 기재하고, 표제저자사항·판사항·발행사항·총서사항 중 상기한 정보원 이

외의 정보원으로부터 취한 것은 각괄호로 묶어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AACR2R에 있어서는 녹음자료의 주정보원을 자료자체 및 레이블로 하고, 주정보원에서 정보를 얻을 수 없을 경우에는 인쇄물딸린자료 · 보관용기 · 기타정보원 순으로 정보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6.0B1) 또한 각 서지사항별 기술정보원을 정하고 있는데(6.0B2), 1) 표제저자사항은 주정보원에서, 2) 판사항 · 발행사항 및 총서사항은 주정보원 · 인쇄물딸린자료 · 용기에서, 3) 형태사항 · 주기사항 및 표준번호 · 구득조건사항은 모든 정보원에서 정보를 취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상의 방법으로 정보를 취할 수 없어 참고자료와 같은 다른 정보원에서 채택하거나 스스로 이를 만들어낼 경우에는 각괄호에 묶어 기재하고, 그 정보원을 주기사항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AECT4에서는 일반적으로 모든 비도서자료에 대해 자료자체 및 용기(용기가 그 자료의 필수적인 부분일 경우) · 첨부된 데이터 · 제작자의 데이터 · 그 자료와 완전히 분리된 용기 및 다른 정보원 순으로 정보를 취하도록 하고, 서명 · 판사항 및 총서사항은 그 자료자체에서 취하도록 하고 있다.(III) 그리고 각 자료에 따른 주정보원은 서명저자사항에서만 명시하고 있으며, 매체표시(자료종별표시)와 대조사항은 가능한 그 자료의 모든 정보원에 대한 검토를 통해 서지정보를 얻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녹음자료에 있어서 서명저자사항의 정보원은 주로 레이블과 용기 및 자료자체의 음성정보를 주정보원으로 하고, 이들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첨부자료 · 제작자목록 및 기타 참고정보원에서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기술사항은 앞서 언급한 모든 비도서자료에 대한 정보원 순위 즉, 자료자체 및 용기 · 첨부된 데이터 · 제작자의 데이터 · 그 자료와 분리된 용기 및 다른 정보원 순으로 규정하고 있다.

KORMARC(비도서자료용)에서는 녹음자료의 유품정보원을 레이블 · 딸린자료 · 보관용기 순으로 정하고 있으며, “녹음자료는 녹음정보보다 인쇄된 정보를 우선적으로 한다. 즉 디스크에 레이블과 녹음된 정보가 있는 경우, 레이블에 있는 정보를 우선적으로 채기한다”고 주기하고 있다.(0.5.1) 그리고 서지사항별 유품정보원에 대해서는 비도서자료 모두를 공동으로 다루고 있는데(0.5.2), 녹음자료의 해당사항만을 적용해 보면, 1) 표제 및 저작자사항은 유품정보원에서, 2) 판사항 · 발행사항 및 총서사항은 유품정보원 · 딸린자료에서, 3) 형태사항은 녹음자료자체에서, 4) 주기사항과 국제표준번호 · 입수조건에 관한 사항은 녹음자료 자체 또는 그 밖의 정보원에서 정보를 취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유품정보원 이외의 곳에서 채택한 정보는 각괄호로 묶어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KORMARC(비도서자료용)은 앞서 언급한 ISBD(NBM) · AACR2R · AECT4와 비교해 볼 때, 녹음자료 자체를 기술정보원에 포함시키지 않고 녹음정보보다 인쇄된 정보를 우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조항이 ISBD(NBM)과 AACR2R에서도 있으나 전제조건이 따르는 경우이다. “녹음정보”란 녹음자료 자체가 아니라 음으로 녹음자료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정보를 의미하므로, 녹음자료에서 녹음된 자료자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정보원이

다.<sup>41)</sup> 따라서 ISBD(NBM) · AACR2R · AECT4와 같이 녹음자료 자체는 주요 유품정보원으로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KORMARC(비도서자료용)에서는 유품정보원에 딸린자료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서지사항별 유품정보원 중 판사항 · 발행사항 · 충서사항에서 “유품정보원, 딸린자료”로 기술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다.

## 2) 자료종별표시

자료종별(식별)표시란 목록대상이 되는 자료의 물리적인 형태를 식별하는 것으로, ISBD(G)와 AACR2 이전에는 규정된 바 없는 목록기술사항으로서 통상 비도서자료의 정리시에만 사용되는<sup>42)</sup> 기술사항이다. 자료종별표시는 일반자료표시(GMD: general material designation)와 특정자료표시(SMD: specific material designation)로 구분되는데, 이 중 일반자료표시란 기술되는 자료의 총체적인 종별표시로 서명책임표시사항에 기술되고, 특정자료표시는 일반자료표시에 속한 자료의 상세한 특수사항을 기입하는 것으로 형태기술사항이나 주기사항 범위에 기술된다. 따라서 여기에서 언급하는 자료종별표시란 일반자료표시를 말하며, 특정자료표시는 다음의 3) 형태사항의 기술에서 논하기로 한다.

자료종별표시의 기능은 첫째, 목록대상이 되는 자료의 특성이나 유형을 표현하여 이용자에게 자료유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둘째, 매체의 형태적 특성을 기술하여 이용자가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기 등을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하고, 셋째, 동일표제를 가진 자료의 다양한 물리적 형태를 식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여 자료종별표시는 이용자에게 자료의 형태에 관하여 빠르게 알려주는 일종의 조기경보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sup>43)</sup>

조사대상의 목록규칙 중 자료종별표시의 기술에 있어서 ISBD(NBM)과 AACR2R은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1.2.2와 6.1C), AECT4는 필요한 경우 생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KORMARC(비도서자료용)은 인쇄자료 이외의 각종 형태자료의 자료종별 성격을 나타내 주기 위하여 기술한다고 하고 있다.(1.2)

자료종별표시의 명칭에 대하여는 ISBD(NBM)과 AACR2R은 “sound recording”, AECT4는 “audiorecording”을, KORMARC(비도서자료용)은 “녹음자료”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AACR2R은 비도서자료의 일반자료표시에서 영 · 미간의 용어통일을 이루지 못하여 영국측의 리스트 1과 미국측의 리스트 2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나(1.1C1), 녹음자료에 대하여는 같은 “sound recording”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KORMARC에서는 본 규칙을 적용한 실례의 제시에서 자료종별표시 중 일반자료표시가 아닌 특정자료표시인 [음반]이 자료종별표시로 사용되고 있어<sup>44)</sup> 혼돈이 야기된다 하겠다. 따라서 도서관자료로서 비도서자료의 비중이

41) 조명희, “비도서자료의 편목정책과 기술규칙”,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0권 4호(1996. 12), p. 68.

42) 남태우, “비도서자료의 매체표시에 관한 연구”, 《도서관학》 제15집(1988), p. 137.

43) 조명희, *op. cit.*, p. 70.

큰 오늘날에 있어 자료종별표시에서의 선택사항 문제와 국제적으로 통일된 명칭의 사용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생각된다.

자료종별표시의 기재위치 및 구두법에 대하여는 ISBD(NBM)·AACR2R·KORMARC(비도서자료용)은 기본적으로 서명책임표시사항에서 본서명 다음에 각괄호에 넣어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목록 레코드의 앞부분, 즉 대등서명·여타서명정보의 앞에 기술되므로써 서명사항의 물리적 길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로 하여금 자료의 형태를 신속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AECT4는 서명사항의 뒤에 각괄호에 넣어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서명사항의 뒤에 기술되므로써 서명의 길이에 따라 위치가 이동하게 된다.

이 외에도 ISBD(NBM)에서는 종합표제 없이 서로 다른 저자에 의한 다른 표제가 함께 수록된 경우에는 서명/저자·서명/저자[자료종별표시] 형식으로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AECT4에서는 통일표제가 목록기술에 포함될 때에는 서명사항 다음이 아니라 통일표제 다음에 자료종별표시를 옮겨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sup>44)</sup> 그리고 KORMARC(비도서자료용)에서는 편차나 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뒤에, 종합표제가 없이 개별표제만 나타나 있고 이들이 동일 저작자에 의해 발행된 경우에는 마지막 개별표제 뒤에, 각기 다른 저작자에 의해 발행된 경우에는 ISBD(NBM)과 같이 마지막 “개별표제/저작자” 뒤에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1.2)

### 3) 형태사항의 기술

서지기술사항 중 형태사항은 자료의 형태적인 특징을 기술하는 사항임과 동시에 같은 자료종별표시 내에서도 각 자료의 물리적인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기술사항으로, 특히 녹음자료를 비롯한 비도서자료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녹음자료의 형태사항은 녹음자료에 속하는 각 자료의 독특한 물리적인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기술하여야 하며,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녹음자료 매체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으므로 이들의 물리적인 특징 또한 충분히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녹음자료 형태사항의 기술을 위한 정보원에 대하여 AACR2R은 모든 정보원에서(1.5A2), AECT4는 각 자료에 대한 직접적인 검토와 측정을 통해서(VIII), KORMARC(비도서자료용)은 녹음자료 자체에서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ISBD(NBM)은 ISBD(M)과 ISBD(S) 등에서 형태사항에 대해 당해출판물 자체로 규정한 것과는 달리, 각 기술사항에 따른 정보원이 없어 앞서 기술의 정보원에서 언급한 정보원의 순위(0.5)에 준해야 할 것이다.

녹음자료의 형태사항은 일반적으로 ISBD(NBM)·AACR2R·KORMARC(비도서자료용)에

44) 『한국문헌자동화목록기술규칙 : 비도서자료용』, *op. cit.*, p. 31.

45) Alma M. Tillin and William J. Quinly, *op. cit.*, p. 38.

서와 같이 1) 자료의 수량과 특정자료표시<sup>46)</sup> 2) 형태적 세부사항 3) 크기 및 4) 빌린자료에 대한 기술로 구분되어, 형태적 세부사항 앞에는 빈칸·쌍점·빈칸을, 크기 앞에는 빈칸·쌍점·빈칸을, 빌린자료 앞에는 빈칸·덧셈표·빈칸을 앞세워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AECT4는 큰 구분 없이 7개의 요소를 기술하되, 구두점은 자료수량과 특정자료표시, 크기: 시간; 재생속도; 녹음형식; 기타 물리적인 특성 & 빌린자료 식으로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자료의 수량과 특정자료표시는 단행본의 면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체로 모든 규칙에서 특정자료표시와 수량 및 전체연주시간을 표시한다. 이때 특정자료표시는 각 녹음자료의 특정 자료명을 구체적인 형태로 그 수량과 함께 수량을 아라비아숫자로 앞세워(국내자료시 KORMARC은 수량을 뒤에 둠) 표시하고 전체연주시간은 괄호에 넣어(AECT4는 쌍점을 앞 세움) 기술하는데, 각 목록규칙에 따른 특정자료명은 <표 1>와 같다. 이때 KORMARC(비도서자료용)에 있어서 국내자료시 수량을 세는 단위명칭이 매·개·면·릴 등으로 일관성이 없어 혼돈을 일으키므로 이에 대해 좀더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을 적용하는 문제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sup>47)</sup> 또한 특정자료표시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통일된 보편성 있는 명칭이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lt;표 1&gt; 녹음자료의 특정자료표시(SMD)

ISBD(NBM)	AACR2R	AECT4	KORMARC (비도서자료용)
sound recording	sound recording	audiorecording	녹음자료
sound cartridge	sound cartridge	cartridge	음반
sound cassette	sound cassette	cassette	녹음트랙필름
sound disc	sound disc	disc	녹음카트리지
sound reel	sound tape reel sound track film roll	reel  roll  cylinder  page  wire	녹음카세트 녹음테이프 릴  * 녹음자료는 수록된 매체의 명칭에 그 수량과 단위 명칭을 덧붙여 기술한다.(5.1.2)

46) 자료종별표시에서의 일반자료표시(GMD)에 속한 자료의 특수사항인 특정자료표시(SMD: specific material designation)를 말한다.

47) 조명희, *op. cit.*, p. 76.

형태적 세목 또는 물리적 특성 사항에는 각 녹음자료에 따른 특성을 기술하며, 녹음방식·재생속도·음구의 특성·트랙배치·트랙수·채널수·녹음 및 재생특성 순으로 쌍반점을 앞세워 기술하는 AECT4를 제외한 나머지 규칙들은 반점을 앞세워 기술하되, 녹음자료의 형태에 따라 이 중 음구의 특성은 아날로그음반에, 트랙배치는 녹음트랙필름에, 트랙수와 녹음 및 재생특성은 각종 테이프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녹음자료의 대표적인 음반과 테이프로 구분하여 정리해 보면, 음반은 “녹음방식, 재생속도, 음구의 특성, 채널수” 순으로, 테이프는 “녹음방식, 재생속도, 트랙배치, 트랙수, 채널수, 녹음 및 재생특성” 순으로 기술된다.

녹음자료의 크기 역시 녹음자료 각 종류의 형태에 따라 직경이나 세로의 길이와 자료의 폭, 테이프의 폭 등을 inch나 cm, mm 등의 단위로 표기한다. 따라서 녹음자료 중 음반과 릴테이프는 그 직경을 inch나 cm로, 카세트와 카트리지의 경우에는 용기의 크기와 테이프의 폭을 채기하되 용기의 크기는 세로×가로 cm로 테이프의 폭은 mm나 inch로 채기한다. 조사대상 목록규칙 중 특히 cm와 inch 표기에 있어서 ISBD(NBM)은 주로 cm를, AACR2R은 주로 inch를, AECT4는 주로 inch를 쓰되 inch(cm)형식을, KORMARC(비도서자료용)은 cm(또는 inch) 형식으로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크기의 기술단위 역시 국제적으로 가장 보편성 있게 사용되는 단위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AECT4에서는 다른 규칙들과는 달리 크기의 기재위치가 자료의 수량 및 특정자료표시와 함께 반점을 앞세워 그 뒤에 기술된다.

딸린자료의 기술은 녹음자료에 첨부된 부차적인 자료가 있을 경우 기술하는 사항으로, ISBD(NBM)·AACR2R·KORMARC(비도서자료용)은 덧셈표기호를, AECT4는 &기호를 앞세워 기술한다. 이 경우 ISBD(NBM)과 AECT4는 원자료의 형태사항과 같은 순서로 딸린자료를 기술하고, AACR2R과 KORMARC(비도서자료용)은 딸린자료의 성격이나 형태를 나타내는 어구를 기술하되 그 딸린자료의 형태사항을 자세히 기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원괄호 안에 형태사항을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 4) 표목의 기술

목록에 있어서 표목은 검색의 접근점이 되는 표출항목으로, 기입의 배열순서를 결정하고 목록검색상의 접근에 초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표목은 일정한 원칙하에서 기입의 통일성을 띠어야 하며,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어떠한 정보로도 검색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sup>48)</sup> 녹음자료를 비롯한 비도서자료의 기본기입의 표목선택에 있어서 저자명기본기입원칙과 서명기본기입원칙의 채택문제는 목록규칙에 있어서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들 자료의 경우는 도서와는 달리 저자의 개념이 분명하지 못하거나 책임소재가

48) 박수정, *op. cit.*, p. 31.

통합적으로 나타나는 복합성을 띤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도서관자료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시키기 위해서는 도서와 비도서와의 구별이 없는 통합목록을 작성하는 것이며, 통합목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기입의 선정은 도서와 같은 원칙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sup>49)</sup>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도서관자료에 대한 이용자 의 요구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조사대상의 목록규칙 중 ISBD(NBM)과 KORMARC(비도서자료용)은 표목에 대한 규정은 없이 서지기술사항에 대한 기술규칙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KORMARC(비도서자료용)은 KORMARC형식에서 표시기호 100 · 110 · 111 · 130에 해당 식별기호로 구분하여 이미 선정된 기본표목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어 상당한 혼돈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AACR2R은 저자나 단체를 표목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저자명기본기입원칙을, AECT4는 서명기본기입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 저작의 창작에서 지적 · 예술적 책임성이 명백하고 그 저작을 식별하는데 있어서 명백한 창작자에 대해서는 저자명기본기입원칙을 허용하고 있다.

녹음자료의 경우, 다른 비도서자료와는 달리 대부분 그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뚜렷한 뿐만 아니라 특히 고전음악과 같은 경우는 표제보다 작곡자에 의한 접근이 용이하다. 게다가 표제를 표목으로 채택할 경우에는 레이블상의 표기의 다양성 때문에 동일저작자의 동일작품이 여러 곳에 흩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역시 그 작품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작곡자 또는 저자나 단체를 기본표목으로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sup>50)</sup>

AACR2R은 기본적으로 모든 다양한 도서관자료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기본저록원칙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녹음자료를 비롯한 몇몇 자료에서는 표목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녹음자료를 위한 기본표목선정(21.23)에 대한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1) 한 작곡가에 의한 한 작품은 주 책임자인 작곡자나 연주자(성악가 · 가수 · 낭독자 · 연주단체)를 기본기입으로 하고, 책임자가 3인 이하의 경우는 대표책임자나 처음에 표시된 책임자를 기본기입으로 한다.(21.23A), 2) 한 사람이나 단체에 의한 2개 이상의 작품은 그 개인이나 단체명을 기본기입으로 한다.(21.23B), 3) 종합표제가 있는 2개 이상 또는 2인(단체명 포함) 이상의 작품은 주 책임자를 기본기입으로 한다. 그리고 주 책임자가 3인까지는 대표저자나 처음에 표시된 책임자를, 3인 이상이거나 주 책임자가 없으면 서명을 기본기입으로 한다.(21.23C), 4) 종합표제가 없는 2개 이상 또는 2인(단체명 포함) 이상의 작품은 일반적으로 대중음악의 경우는 처음 작품의 대표연주자를, 고전음악의 경우는 처음 작품의 작곡자를 기본기입으로 한다.(21.23D)

49) 강미혜, “비도서자료의 목록규칙에 관한 고찰 : AACR을 중심으로”, 《도서관학》 제11집(1984, 2), p. 127.

50) 손정표, “테이프 녹음자료의 서가상의 분류와 표목선택에 관한 고찰”, 《도서관》 제33권 7호(1978, 9), p.

AECT4에서는 모든 자료의 기본기입의 선정(IV)에 대해 기본적으로 서명·총서명 및 창작자(저자)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녹음자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역시 일반규정에 준하고 있다. 따라서 녹음자료에 있어서 서명기본기입은 기본규칙 IV.A를, 총서명 기본기입은 기본규칙 IV.B1-3을, 창작자기본기입은 기본규칙 IV.C1-3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서명기본기입을 채택하는 경우는 1) 그 녹음자료를 확인하는데 있어서 그 창작자 책임이 중요하지 않을 때, 2) 음악과 가사가 결합된 자료로 그 중 어느 것이 중요한가가 의문시될 때이다. 또한 총서명기본기입을 채택하는 경우는 1) 개개 자료들의 주제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하나의 전체 주제를 이를 때(이 경우 개개 자료들의 서명은 부서명으로 취급), 2) 시리즈 제작자에 의해 완전한 세트로서만 판매되어 시리즈에 속하는 개개 자료들이 독립된 저작물로 이용될 수 없을 때, 3) 다른 자료의 딸린자료로서 완전한 저작물이 아닌 녹음자료일 때이다. 그리고 창작자기본기입을 채택하는 경우는 1) 지적·예술적 주 책임이 분명한 원래 녹음자료로 만들어진 것, 2) 주 책임자가 분명한 인쇄물에 대해 녹음자료로 재현한 완전한 복재물, 3) 연주자나 연주단체가 기본기입이 되는 경우로 대중음악이나 즉흥곡에서와 같이 작품의 해석이 중요하고 그 자료를 확인하는데 그들이 중요할 때이다.

이상의 기본기입 외에 부출기입의 수와 종류는 각 목록규칙의 해당사항 및 각 도서관에서의 목록이용의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 5) 통일표제

통일표제란 동일한 저작의 서로 다른 출판물들이 서로 다른 본서명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이들 저작을 한 곳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들 서명을 통일시켜 표기하는 것을 말하며,<sup>51)</sup> 일명 관용표제라고도 한다. 통일표제는 주로 동일한 저작이 서로 다른 서명을 가진 경우·종교 경전·무저자고전·음악작품·법률 및 조약 등에서 사용된다. 특히 음악이 대부분을 이루는 녹음자료의 경우, 한 음악작품이 자료의 발행기관이나 언어에 따라 다양한 형식의 표제로 표현되고 있어 동일한 작품을 한 곳에 모아 검색되도록 해야 하므로, 녹음자료의 목록에서 통일표제는 중요한 기술사항이 된다. 이것은 통일표제가 실제로 목록규칙으로서 제정된 것이 음악자료에 대한 1949년 LC의 *Rules for Descriptive Cataloging in the Library of Congress*의 제9장 악보에서 부터임과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다.

조사대상의 목록규칙 중 ISBD(NBM)은 통일표제에 대한 규정이 없고, AACR2R은 제2부 제25장 통일표제(uniform titles)에서 전집·법률자료·경전·음악작품 등의 통일표제를 함께 다루고 있으며 음악작품에 대해서는 25.25-25.35에 규정하고 있다. 또한 AECT4는 AACR1의 제4장 통일표제와 제13장 음악의 통일표제(규칙 233-243)를 참조하여 서명/매체표시/책임사

51) 최정태, 양재한, 도태현 공저, 『목록조직의 이론과 실제』, 부산 :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9. p. 109.

항(영역2, V.7)과 녹음자료의 서명/매체표시/책임사항에서 간략하게 다루고 있다. 그리고 KORMARC(비도서자료용)은 표제저작자사항의 본표제에서 통일표제의 사용을 규정하고 있다.(1.1.11)

통일표제의 선정기준은 일반적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서명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AACR2R은 음악작품에 대하여 작곡자의 원작품의 언어로 된 초판의 표제에 기초를 두되, 같은 언어로 된 나중 서명이 더 잘 알려져 있을 때는 나중 서명을 기준으로(25.27A1), AECT4는 그 작품이 원래 발행된 서명이나 혹은 그 작품이 문헌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서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두 규칙에서의 통일표제 선정기준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KORMARC(비도서자료용)은 통일표제의 선정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하겠다.

통일표제의 기재위치와 구두법에 있어서는 AACR2R · AECT4 · KORMARC(비도서자료용) 모두에서 기본표목의 다음행, 즉 기본표목과 본표제 사이에 각괄호에 넣어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AECT4는 통일표제가 목록에 기술되는 경우에는 자료종별표시를 원래의 서명사항의 뒤에서 통일표제 다음으로 옮겨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통일표제가 기본표목으로 사용될 경우, AACR2R과 AECT4는 통일표제에의 각괄호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KORMARC(비도서자료용)은 KORMARC형식에서 표시기호 130에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통일표제의 기술에 있어서는 악곡형식이나 연주수단으로 된 명칭과 그 이외의 악곡명 그리고 통일표제의 언어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통일된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sup>52)</sup> 조사대상의 목록규칙 중 AECT4는 이에 대한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고, KORMARC(비도서자료용)은 음악자료의 경우, 악곡형식을 중심으로 하여 [통일화된 악곡형식명, 연주수단, 시리즈번호, 작품번호, 장단조 ; 편곡. 언어] 순으로만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AACR2R은 통일표제의 기술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1) 표제가 한 악곡형식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① 통일표제에 그 연주수단과 함께 자료의 유형에 따라 시리즈번호 · 작품번호 · 주제색인번호 · 조기호 및 기타 식별기호 등을 반점을 앞세워 기술한다.(25.30C-E) ② 언어에 있어서 표제가 동일어원을 갖는 영어 · 불어 · 독일어 및 이탈리아어를 사용하거나 그 동일한 용어를 이들 여러 언어로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영어를 사용한다.(25.29A) 2) 표제가 2개 이상의 악곡형식으로 구성된 경우에는(25.31) ① 같은 표목 아래의 여러 통일표제사이에 서로 다른 요소가 있을 때는 반점을 앞세워 연주수단을 부가하거나 원괄호에 기술적인 낱말을 부가한다. ② 극음악의 경우 각색되거나 새로운 텍스트가 제공되어 표제가 변경될 때는 원작품의 통일표제 뒤에 원괄호에 각색된 표제나 변경된 표제를 넣어 기술한다. 3) 각종 독주악기 · 앙상블 · 오케스트라 · 독창 · 합창 · 가곡 등에서의 용어규정에 있어서 통일된 명칭을 제시하고(25.30)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52) 김남석, 조도희 지음, *op. cit.*, p. 77.

## V. 요약 및 결론

녹음자료는 음의 기록물로서 비도서자료 중 최초로 도서관자료로서 정보봉사에 활용되면 서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계속 발전되어 왔다. 오늘날 녹음자료는 크게 증가하여 도서관에 있어서 비도서자료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가고 있다. 따라서 녹음자료의 검색도구로서 목록의 중요성은 크다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녹음자료의 특성과 종류에 대해 살펴보고, 녹음자료에 관련된 목록규칙들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리고 오늘날 녹음자료를 취급하고 있는 비도서자료 목록규칙의 근간을 이루는 ISBD(NBM) · AACR2R · AECT4 및 KORMARC(비도서자료용)을 대상으로 녹음자료의 목록기술시 다른 자료들과 구별되는 특수한 기술영역, 즉 기술의 정보원 · 자료종별표시 · 형태사항 · 표목 및 통일표제에서의 특징과 제문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나타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녹음자료는 음을 재생하기 위하여 기계적으로 또는 전기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기록한 음의 진동에 대한 기록자료로, 크게 음반과 테이프로 구분된다. 이 중 음반은 녹음방식에 따라 SP판 · LP판 · EP판 · CD · AHD · MD 등으로, 테이프는 용기에 따라 릴테이프 · 카트리지테이프 · 카세트테이프 등으로 구분되며, 과학의 발달에 따라 계속 새로운 매체가 출현하여 발전 · 변화되고 있다.

둘째, 1942년 미국음악도서관협회의 *Code for Cataloging Phonorecords*로 시작된 녹음자료에 관한 목록규칙은 오늘날 대부분 비도서자료 목록규칙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들 목록규칙은 목록의 자동화 및 국제적인 정보유통을 위한 목록의 표준화를 전제로 계속 발전해 오고 있으며, 모든 도서관자료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시키기 위해 도서와 비도서와의 구별이 없는 통합목록규칙으로 발전하고 있다.

셋째, 녹음자료의 목록기술을 위한 정보원은 목록기술시 근거가 되는 사항으로 제시한 것으로, ISBD(NBM)은 녹음자료를 비롯한 모든 비도서자료를 공동으로 다른 반면, AACR2R · AECT4 및 KORMARC(비도서자료용)은 녹음자료의 기술정보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AECT4는 서명책임표시사항에서만 주정보원을 명시하고, 나머지 사항은 모든 비도서자료와 공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녹음자료의 정보원은 일반적으로 자료자체 및 레이블 · 용기 · 딸린자료 · 기타 정보원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KORMARC(비도서자료용)은 이 중 자료자체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그러나 녹음자료자체의 음성정보는 음의 기록물인 녹음자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정보원이 되므로, 다른 규칙들에서와 같이 으뜸정보원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넷째, 자료종별표시는 목록대상이 되는 자료의 물리적인 형태를 식별하는 것으로, ISBD

(NBM) · AACR2R · AECT4는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료종별표시의 명칭에 대하여 ISBD(NBM)과 AACR2R은 “sound recording”을, AECT4는 “audiorecording”을, KORMARC(비도서자료용)은 “녹음자료”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기재위치에 대하여 ISBD(NBM) · AACR2R · KORMARC(비도서자료용)은 기본적으로 서명책임표시사항에서 본서명 다음에, AECT4는 서명사항 다음에 각괄호에 넣어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각종 도서관자료에 대한 자료종별표시는 목록규칙이 도서와 각종 비도서를 통합한 통합목록으로 발전하고 있는 오늘날, 이용자에게 자료의 다양한 형태에 관해 빠르게 알려주므로써 자료의 이용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술사항이다. 따라서 자료종별표시는 모든 비도서자료에 대해 기술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명칭과 기재위치의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형태사항은 자료의 형태적인 특징을 기술하는 사항으로, 녹음자료 내에서도 각 자료의 물리적인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중요한 기술사항이다. 녹음자료의 형태사항에 대하여 ISBD(NBM) · AACR2R · KORMARC(비도서자료용)은 1) 자료의 수량과 특정자료표시 2) 형태적 세부사항 3) 크기 4) 딸린자료에 대한 기술로 구분하여 규정한 반면, AECT4는 큰 구분 없이 7개 요소, 즉 자료수량과 특정자료표시 · 크기 · 시간 · 재생속도 · 녹음형식 · 기타 물리적 특성 · 딸린자료 순으로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자료의 수량과 특정자료표시에서는 특정자료표시와 수량 및 전체연주시간을, 형태적 세부사항에서는 녹음방식 · 재생속도 · 음구의 특성 · 트랙배치 · 트랙수 · 채널수 · 녹음 및 재생특성 중 자료의 형태에 따른 해당사항을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크기에서는 형태에 따라 음반과 릴테이프는 그 직경을, 카트리지와 카세트테이프는 용기의 크기와 테이프의 폭을 inch나 cm 및 mm로, 딸린자료에는 첨부된 부차적인 자료가 있을 경우 딸린자료와 그 형태사항을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형태사항의 기술에 있어서 특정자료표시의 명칭과 크기 기술시의 단위문제는 국제적으로 가장 보편성 있는 명칭과 단위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여섯째, 표목은 검색의 접근점이 되는 표출항목으로 목록규칙에서는 주로 기본표목의 선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ISBD(NBM)과 KORMARC(비도서자료용)은 서지기술사항에 대한 규칙만을 규정하고 표목에 관한 규정은 없다. 또한 AACR2R은 저자명기본기입원칙을, AECT4는 서명기본기입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 자료에 따라 저자명기본기입원칙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KORMARC(비도서자료용)은 KORMARC형식에서 표시기호 1XX에 이미 선정된 기본표목을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기술규칙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녹음자료는 다른 비도서자료와는 달리 대부분 그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뚜렷할 뿐만 아니라 특히 음악작품의 경우 표제보다 작곡자나 연주자에 의한 접근이 용이하며 레이블상의 표제표기의 다양성으로 인한 문제 때문에, AACR2R에서와 같이 저자명기본기입원칙 하에 도서와의 통합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일곱째, 통일표제는 한 저작이 발행기관이나 언어에 따라 다양한 표제로 표현되는 경우 이에 대한 통일된 표제로, 주로 음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녹음자료에 있어서는 중요한 기술사항이 된다. 통일표제에 대하여 ISBD(NBM)은 규정이 없고, AECT4와 KORMARC(비도서자료용)은 표제저자사항에서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AACR2R은 제25장 통일표제에서 음악작품을 비롯한 각종 자료에 따른 규정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통일표제의 선정기준에 있어서 KORMARC은 이에 대한 규정이 없고, AACR2R와 AECT4는 작곡자의 원작품의 언어로 된 초판의 표제나 가장 잘 알려진 표제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통일표제의 기재위치는 AACR2R·AECT4·KORMARC(비도서자료용) 모두 기본표목과 본표제 사이 행을 달리하여 각괄호에 넣어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통일표제의 기술에 있어서 AECT4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이 예시에만 제시하고 있고, KORMARC(비도서자료용)은 음악자료의 경우 악곡 형식을 중심으로 기술하도록 한 반면, AACR2R은 음악작품의 각 유형이나 언어에 따른 기술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표제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여러 서명 중 무엇을 기준으로 어떠한 서명을 선택하느냐와 이를 어떻게 기술하느냐는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KORMARC(비도서자료용)과 AECT4에서는 이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녹음자료에 관한 각종 목록규칙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녹음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국내의 유일한 비도서자료용 KORMARC 기술규칙과 포맷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 각 비도서자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목록규칙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서와 각종 비도서자료를 통합한 통합목록으로의 발전방향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음악 녹음자료의 기초가 되는 악보를 비롯한 각 비도서자료 매체의 목록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현

- 강미혜. “비도서자료의 목록규칙에 관한 고찰: AACR을 중심으로”, 《도서관학》 제11집 (1984. 2). pp. 117-146.
- 강으리. 음향자료 보존에 관한 연구. 서울: 성균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김남석, 조도희 지음. 『비도서자료의 조직이론』.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2000.
- 김병진. 『오디오가이드』. 서울: 과학도서, 1983.
- 김옥진. “음악도서관의 음향자료 관리에 관한 연구”, 《도서관학연구지(승의여전 도서관과)》 제16호(1991). pp. 57-67.
- 김정열. 음악자료의 통일표제에 관한 연구. 서울: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남태우. “비도서자료의 매체표시에 관한 연구”, 《도서관학》 제15집 (1988), pp. 119-140.
- 박수정. 국악녹음자료의 목록기입에 관한 연구 : 영미목록규칙 제2판에 준거하여. 서울: 성균 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박찬훈. 비도서자료 편목규칙에 관한 연구 : AACR과 AECT규칙을 중심으로. 서울: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서용준. 『오디오입문』. 서울: 세화, 1994.
- 손정표. “테이프 녹음자료의 서가상의 분류와 표목선택에 관한 고찰”, 《도서관》 제33권 7호 (1978, 9). pp. 10-22.
- 송민선.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음향자료의 보존관리에 관한 방안”, 《문화재》 제29호 (1996, 12). pp. 233-253.
- 양재한. “영미계 목록규칙의 음악자료에 대한 통일표제 기술형식의 변천고”, 《창원전문대 논문집》 제5집(1987). pp. 473-499.
- 이승원. “녹음자료의 대조사항에 대한 목록기술형식의 변천에 관한 고찰”, 《창원전문대 논문집》 제4집(1986). pp. 443-475.
- 이영동. 『알기쉬운 오디오』. 서울: 삼호출판사, 1992.
- 이천효. “영미계 목록규칙의 비도서자료에 대한 GMD와 SMD의 변천과정”, 《동래여전 논문집》 제6집(1987). pp. 161-197.
- 정옥경. “녹음자료의 정리에 관한 연구”, 《인천전문대논문집》 제18집(1992). pp. 183-198.
- 정진홍. 음악도서관의 전문봉사에 관한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 조명희. “비도서자료의 편목정책과 기술규칙”,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0권 4호(1996, 12). pp. 61-83.
- 주영주. “Nonprint 자료의 목록규칙에 관한 연구 : 미국을 중심으로”, 《교육공학연구》 제1 권 1호(1985, 12). pp. 21-44.
- 『한국문헌자동화목록기술규칙 : 비도서자료용』.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1996.
-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 비도서자료용』.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1996.
- 黒岩高明. 『視聽覺資料組織法 : 畵像・映像・錄音資料の整理と利用』. 東京: 學校圖書株式會社, 1979.
-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North American Text.*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67.
- Butch, Olga. "Scores and Recordings", *Library Trends*, Vol.23, No.3(Jan., 1975). pp. 427-450.
- Cazeaux, Isabelle. "The International Code for Cataloguing Music", In Carol June Bradley ed. *Reader in Music Librarianship*. Washington, D.C. : Indian Head Co., 1973.

- pp. 163-171.
- Daily, J. E. *Cataloguing Phonorecordings: Problems and Possibilities*. New York: Marcel Dekker, 1975.
- Duckles, Vincent H. "Music Literature, Music, and Sound Recordings", *Library Trends*, Vol.15, No.3(Jan., 1967). pp. 494-521.
- Gorman, Michael and Winkler, Paul W. ed. *Anglo-American Cataloguing Rules*, 2nd ed.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78.
- \_\_\_\_\_. *Anglo-American Cataloguing Rules*. 2nd ed. 1988 Revision.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88.
- Hoffmann, Frank W. *The Development of Library Collections of Sound Recordings*. New York: Dekker, 1979.
- ISBD(NBM) : 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 for Non-Book Materials*. London: IFLA International Office for UBC, 1977, 1987.
- Jones, Malcolm. *Music Librarianship*. London: Clive Bingley, 1979.
- Massonneau, Suzanne. "Developments in the Organization of Audiovisual Materials", *Library Trends*, Vol.25, No.3(Jan., 1977). pp. 665-684.
- Smiraglia, Richard P. *Music Cataloging: the Bibliographic Control of Printed and Recorded Music in Libraries*. Englewood, Colo.: Libraries Unlimited, 1989.
- \_\_\_\_\_. "Uniform Titles for Music : an Exercise in Collocating Works",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Vol.9, No.3(1989). pp. 97-114.
- Sunder, Mary Jane. "Organization of Recorded Sound",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ol.13, No.1(1969). pp. 93-98.
- Tillin, Alma M. and Quinly, William J. *Standards for Cataloging Nonprint Materials*. 4th ed. Washington, D.C.: Association for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1976.
- Weidow, Judy. *Music Cataloging Policy in the General Libraries*. Austin: General Libraries, The Univ. of Texas at Austin, 1984.